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55 코스모화학(주)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51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예탁결제원 의결권행사(새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동봉한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 기명날인하여 대리인이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4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5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키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홈페이지관리기관 : 미래에셋대우(주)
- 인터넷 주소(모바일포함) : https://v.miraeassetdaewoo.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3월 12일 ~ 2019년 3월 21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당사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COSMO CHEMICAL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함 재 경 (직인 생략)

※ 별첨

[이사선임의 건(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내이사	허경수 (57.01.01)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現)코스모그룹 회장 ・現)㈜정산앤컴퍼니 대표이사	이사회	특수 관계인	없음
사내이사	함재경 (58.05.24)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前)코스모신소재㈜ CFO ・現)코스모화학㈜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김창수 (63.08.15)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前)㈜코스모앤컴퍼니 CFO ・現)코스모화학㈜ CFO	이사회	없음	없음

※ 정관상 사내이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 별첨

[정관변경 (안)]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6조의2(주권의 종류)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6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전자증권법 반영
제8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8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의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전자증권법 반영
제9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8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삭 제>**	전자증권법 반영
제10조(주주명부 개폐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0조(주주명부 개폐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기간표현 수정
제12조의2(신설)	**제12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전자증권법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3조(사채발행의 관한 준용규정) 제8조, 제9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사채발행의 관한 준용규정)** 제8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삭제
제34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신설>	**제34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이사회 소집권자 범위확대
제38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제38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외감법 개정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2조의 2, 제13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